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213 |
|----------|------|

발의연월일 : 2024. 8. 27.

발 의 자 : 구자근 · 인요한 · 김선교
박덕흠 · 배준영 · 김도읍
조지연 · 강대식 · 박성민
고동진 · 정점식 · 유상범
강명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 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7조(출원공고) ①·② (생략)</p> <p>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u>2개월</u>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 <p>제57조(출원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30일</u>----- ----- ----- -----.</p> |
| <p>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u>2개월</u>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 <p>제60조(이의신청) ① ----- ----- -----<u>30일</u> <u>이내</u>-----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